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성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2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1월 12일
발 의 자: 박성연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원태,
김춘곤, 김태수, 문성호,
박영한, 박철성, 송재혁,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
이민석, 이은림, 이종태,
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
한 신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상인뿐만 아니라 보행권을 향유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, 지정에서부터 해제 및 변경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.(안 제16조제4항 후단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그 해제나 변경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</p>	<p>제16조(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<u>이 경우 그 해제나 변경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</p>
<p>제17조(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) ① (생략)</p>	<p>제17조(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